

1. 개정이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하는 규정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제19조제2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인증기관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제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청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행정처분 받은 인증기관의 기존 신청 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공동부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제한(안 제4조제2항제4호)

- 1) 인증기관 지정 취소 이력이 있는 기관은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가능
- 2)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을 제한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지정취소, 90일 이내 업무정지, 180일 이내 업무정지로 개별기준을 정함(별표 4호)

다. 지정취소 시 청문 등(안 제5조의3)

- 1) 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시 및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며, 행정처분시 15일 이내에 공고 및 운영기관·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인터넷 게재하며 기존 인증업무에 한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9조제3항)

1)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현
행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제19조제2항”으로, “표시 방법”을 “표시방법,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제5조의3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것

제5조제6항 전단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의3(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

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인증기관의 장 및 제3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영기관의 장과 인증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인증업무에 한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9조제3항 중 “5년”을 “10년”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4]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5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업무 정지 90일 이내	지정취소	
다.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	업무 정지 90일 이내	업무 정지 180일 이내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90일 이내	업무 정지 180일 이내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5호	지정취소		
바.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90일 이내	지정취소	

형이 확정된 경우				
사.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7호	업무 정지 90일 이내	지정취소	

※ 비고

1.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2. 사목의 경우는 규칙 제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u> 」 제16조제6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u>표시</u>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u> 」 제16조제6항, 제19조제2항----- ----- ----- ----- ----- ----- ----- <u>표시</u> 방법,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⑥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법 제19조제1항</u> ----- ----- -----.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생략)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 ⑥ (생 략)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 ⑤ (생 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
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 각 호
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
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4.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이 종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것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법 제19조제1항 -

----. -----

제5조의2(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19
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
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의3(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인증기관의 장 및 제3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영기관의 장과 인증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인증업무에 한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

기간 등) ① ~ ② (생 략) ③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u>5년</u>으로 한다. ④ (생 략)	기간 등) ① ~ ② (생 략) ③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u>10년</u>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별표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의2 관련) <u><신 설></u>	[별표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의2 관련)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4]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5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업무 정지 90일 이내	지정 취소	
다.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	업무 정지 90일 이내	업무 정지 180일 이내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90일 이내	업무 정지 180일 이내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바.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90일 이내	지정 취소	
	사.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90일 이내	지정 취소	
※ 비고 1.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2. 사목의 경우는 규칙 제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